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3.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7조 제2항 제8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③ ~ ⑤ (생략)</p>	<p>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제7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6